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24-30호
2024. 5. 24.(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규 칙(2)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82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83호) 8

고 시(2)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고시 제2024-59호) 11
- 도시관리계획(중적골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제2024-60호) 12

공 고(2)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588호) 17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체납고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593호) 18

행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설치 행정예고(공고 제2024-594호) 20

공람									
----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 ☎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7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8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무상대부 물품)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구에서 무상대부할 수 있는 물품의 현황은 제2조의 본청 물품관리관이 매년 초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의3(무상대부 절차) ① 제9조의2에 따른 물품을 무상대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물품 무상대부 신청서를 제2조의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은 신청자 적합 및 무상대부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물품 무상대부 허가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의 제목 “(물품재고조사 등)”을 “(사무인계보고서)”로 한다.

서식 목차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목차

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2. 12. 7.>
별지 제4호서식	불용결정 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2. 12. 7.>
별지 제7호서식	청구 및 출급증
별지 제8호서식	도서대출대장
별지 제8호의2서식	물품 무상대부 신청서
별지 제8호의3서식	물품 무상대부 허가서
별지 제9호서식	우표출납부
별지 제10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
별지 제11호서식	물품 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2. 12. 7.>
별지 제13호서식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4호서식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2. 12. 7.>
별지 제16호서식	물품관리카드등록부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1995. 1. 16.>
별지 제18호서식	도서대장
별지 제19호서식	물품검사(수)조서
별지 제20호서식	물품검사서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12. 12. 7.>
별지 제22호서식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별지 제8호의2서식]

물품 무상대부 신청서

○ 물품(재산)의 표시

- 물 품 명 :

- 규 격 :

- 수 량 :

○ 대부(사용)기간 :

○ 대부(사용)목적 :

○ 대부(사용)료 : 무상대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제14조의2에 따름

○ 대부(사용)조건 :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연 락 처

물품관리(운용)관 귀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제14조의2(물품의 무상대부)에 따라 구 소관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물품관리 담당자에게 보여주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별지 제8호의3서식]

물품 무상대부 허가서

○ 물품의 표시

품명	규격	수량	관리부서	비고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상기 표시 물품의 무상대부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조건을 부여하고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불 임 허가조건 1부. 끝.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연 락 처 :

년 월 일

물 품 관 리 (운 용) 관 (인)

허 가 조 건

-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년 월 일 시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4조(사용허가 물품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물품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물품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물품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언제든지 허가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물품의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2. 구의 승인 없이 제5조의 행위를 한 경우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에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제8조(사용물품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물품을 반환할 때에는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물품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 행위라 하더라도 물품의 훼손 등 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개정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관 물품을 무상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무상대부 물품 현황에 대한 공개 및 대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9조의2 및 제9조의3).
- 나. 내용에 맞게 조문 제목을 정비함(제20조).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8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평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이나 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그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조의3(위원의 책무)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 참석 또는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금고 또는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제2항 중 “열람하게 할 수 있다”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을 “출연토록 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를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약정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책무 및 제척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구 금고 평가기준 및 협력사업비 공개 규정을 보완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책무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제4조의2 및 제4조의3).
- 나.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평가기준 등을 금융기관에 교부·열람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선함(제5조).
- 다. 협력사업비 공개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규정함(제9조).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4-59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건물번호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부여 고시일
신탄진동 121-33	대청로 12	건물신축	대청댐의 명칭을 반영	2024. 5. 24.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042-608-5304)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http://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도시관리계획(증척골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동 440-3번지(증척골어린이공원)에 위치한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여 공원이용자 안전 및 편익을 증진시켜 주민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기위한 도시관리계획(증척골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증척골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영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며,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공원녹지과 042-608-51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4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증척골 어린이공원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증척골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범동 440-3번지	2,056.10	2,056.10	-	1998. 06. 20. (대전광역시 고시 제1988-88호)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증척골 어린이공원	○ 시설면적 : 증) 268.19㎡ (당초 592.36㎡ → 변경 860.55㎡)	- 공원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 및 선형 변경으로 인한 시설 면적 증가	
	○ 기반시설 : 증) 210.62㎡ (당초 281.78㎡ → 변경 492.40㎡)	- 광장 및 동선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가	
	○ 휴양시설 : 감) 59.51㎡ (당초 59.51㎡ → 0㎡)	- 공원 리모델링에 따른 휴게공간 폐지	
	○ 유희시설 : 증) 16.48㎡ (당초 251.07㎡ → 변경 267.55㎡)	- 공원 내 선형 변경 및 시설물 변경으로 인한 놀이터 면적 증가	
	○ 운동시설 : 증) 100.60㎡ (당초 0㎡ → 변경 100.60㎡)	- 공원 내 선형 변경으로 인한 체력단련장 신설	
	○ 녹지 : 감) 268.19㎡ (당초 1,463.74㎡ → 변경 1,195.55㎡)	- 시설면적 증가로 인한 녹지면적 감소	

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분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056.10	2,056.10	-	-	-	-	-	-	-	-	
시설지구	592.36	860.55	증 268.19	-	-	-	-	-	-	-	
녹 지	1,463.74	1,195.55	감 268.19	-	-	-	-	-	-	-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시설조서

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	건축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056.10	2,056.10	-	100.00	-	-	-	-	-	-	
계	592.36	860.55	증 268.19	41.85	-	-	-	-	-	-	
기반시설	소계	281.78	492.40	증 210.62	23.95	-	-	-	-	-	
	도로	250.59	368.98	증 118.39	17.95	-	-	-	-	-	
	광장	31.19	123.42	증 92.23	6.00	-	-	-	-	-	
조경시설	-	-	-	-	-	-	-	-	-	-	
휴양시설	59.51	-	감 59.51	-	-	-	-	-	-	-	
유희시설	251.07	267.55	증 16.48	13.01	-	-	-	-	-	-	
운동시설	-	100.60	증 100.60	4.89	-	-	-	-	-	-	
교양시설	-	-	-	-	-	-	-	-	-	-	
편익시설	-	-	-	-	-	-	-	-	-	-	
관리시설	-	-	-	-	-	-	-	-	-	-	
녹 지	1,463.74	1,195.55	감 268.19	58.15	-	-	-	-	-	-	

마.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세부시설조서

구분	번호	시설내용	부지면적(㎡)			시설(개소)		건축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056.10	2,056.10	-	30	42	-	-	-	-	-	-	
시설소계			592.36	860.55	증 268.19	30	42	-	-	-	-	-	-	
기반시설	소 계		281.78	492.40	증 210.62	-	-	-	-	-	-	-	-	
	도로		250.59	368.98	증 118.39	-	-	-	-	-	-	-	-	
	광장(소계)		31.19	123.42	증 92.23	-	-	-	-	-	-	-	-	
휴양시설	1-1 광 장 A		31.19	123.42	증 92.23	-	-	-	-	-	-	-	-	
	소 계		59.51	-	감 59.51	7	17	-	-	-	-	-	-	
	2-1 휴 계 공 간		59.51	-	감 59.51	-	-	-	-	-	-	-	-	
	2-2 사 각 파 고 라		-	-	-	2	2	-	-	-	-	-	-	
	2-3 평 상		-	-	-	2	-	-	-	-	-	-	-	
	2-4 등 의 자		-	-	-	3	13	-	-	-	-	-	-	
2-5 앉 음 벽		-	-	-	-	2	-	-	-	-	-	-		
유희시설	소 계		251.07	267.55	증 16.48	5	3	-	-	-	-	-	-	
	3-1 어 린 이 놀 이 터		251.07	267.55	증 16.48	-	-	-	-	-	-	-	-	
	3-2 조 합 놀 이 대		-	-	-	1	1	-	-	-	-	-	-	
	3-3 그 네		-	-	-	1	1	-	-	-	-	-	-	
	3-4 시 소		-	-	-	1	1	-	-	-	-	-	-	
3-5 자 가 발 전 놀 이 대		-	-	-	2	-	-	-	-	-	-	-		
운동시설	소 계		-	100.60	증 100.60	4	6	-	-	-	-	-	-	
	4-1 운 동 기 구		-	-	-	4	6	-	-	-	-	-	-	
	4-2 체 력 단 련 장		-	100.60	증 100.60	-	-	-	-	-	-	-	-	
관리시설	소 계		-	-	-	14	16	-	-	-	-	-	-	
	5-1 공 원 등		-	-	-	7	9	-	-	-	-	-	-	
	5-2 C C T V		-	-	-	1	1	-	-	-	-	-	-	
	5-3 안 내 판		-	-	-	2	2	-	-	-	-	-	-	
	5-4 표 지 석		-	-	-	1	1	-	-	-	-	-	-	
	5-5 불 라 드		-	-	-	3	3	-	-	-	-	-	-	
녹 지			1,463.74	1,195.55	감 268.19	-	-	-	-	-	-	-		

바. 도로(변경)조서

1) 도로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합계			2류			3류			비 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기 정	6	132.4	250.59	-	-	-	6	132.4	250.59	
변 경	9	188.0	368.98	-	-	-	9	188.0	368.98	

2) 도로 세부총괄표(변경)

등급	구분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1	2.0-3.0	67.7	164.00	진 입 로	광 장 1-1	부지외곽	
변경	소로	3	1	2.0	111.6	225.36	연 결 로	소로3-3	소로3-3	
기정	소로	3	2	2.4	10.2	25.38	진 입 로	부지외곽	소로3-1	
변경	소로	3	2	2.5	4.6	12.20	진 입 로	부지외곽	소로3-1	
기정	소로	3	3	1.0	17.0	17.00	진 입 로	부지외곽	광장 1-1	
변경	소로	3	3	1.7	44.8	77.89	연 결 로	부지외곽	부지외곽	
기정	소로	3	4	1.0	22.0	22.00	진 입 로	부지외곽	광장 1-1	
변경	소로	3	4	1.3	4.2	5.4	진 입 로	부지외곽	광장1-1	
기정	소로	3	5	1.5	4.8	7.24	진 입 로	부지외곽	소로3-1	
변경	소로	3	5	1.5	4.3	6.52	진 입 로	부지외곽	소로3-1	
기정	소로	3	6	1.5	10.7	14.97	진 입 로	부지외곽	소로3-1	
변경	소로	3	6	1.2	6.3	8.68	진 입 로	부지외곽	소로3-1	
신설	소로	3	7	2.5	4.5	12.21	진 입 로	부지외곽	소로3-1	
신설	소로	3	8	2.7	3.5	9.41	연 결 로	소로3-1	광장1-1	
신설	소로	3	9	2.4	4.2	11.31	연 결 로	광장1-1	소로3-1	
총 계	기정	합계			132.4	250.59				
	변경	합계			188.0	368.98				

□ 관계도면: 기재생략.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588호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와 (주)계룡산업에서 시행하는 「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개발행위특례)」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명: 「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개발행위특례)」
2.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주)계룡산업
3. 공고기간: 2024. 05. 24. ~ 2024. 06. 10. (18일간)
4. 재결서 수령장소: 대덕구청 공원녹지과
5.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최종 확인지)	비고
1	곽근숙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95, 103-1001(갈마아파트)	최초 송달일자 (2023.12.5.)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공원녹지과(☎042-608-5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체납고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체납고지)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공고기간: 2024. 5. 24. ~ 2024. 6. 7.
-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제47조(과태료)
-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게시판
- 행정처분 공고 내용
 - 처분의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태료부과(체납고지) 통지
 - 대상업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로16번길 17, 101호 (비래동,성은맨션)/ 아름다운식품(정*영)
 - 처분사유: 2020, 2021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안전위생교육 미이수
 - 처분내용: 과태료421,600원(2020년 과태료 체납 210,800원, 2021년 과태료 체납 210,800원)
- 의견제출
 - 제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위생과 식품유통팀(대전로1033번길 20, 위생과)
 - 과태료납부기한: 2024. 6. 12. (수)
- 유의사항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증가산되어 부과됨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설치 행정예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 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412(중리서로 83 인근) 노상주차장(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2. 행정예고 목적: 주민들의 주차 편의 향상을 위해 노상주차장(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함
3. 예고대상
 - 위치: 대덕구 중리로 412 일원(중리동 362-1 인근)
 - 주차면수: 2면(장애인 주차구역)
 - 조성시기: 2024. 6월 중
 - 관리주체: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
4. 관련근거
 - 가.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행정예고(공고)방법: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 (<https://www.daedeok.go.kr>)

6.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 5. 24.(금) ~ 2024. 6. 13.(목) (21일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교통과(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20)

※ 토·일·공휴일은 대덕구 당직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메일

(FAX: 042-608-3845, 메일: vlfwpdi@korea.kr)

라. 제출양식: 의견제출서(붙임 참조)

마. 제출기일: 2024. 5. 24.(금) ~ 2024. 6. 13.(목)

바.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 주차시설팀(042-608-529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위치도 1부. 끝.

【붙임 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2】

○ 위치도(설치) 및 현장사진

위 치	설치 면수	비 고
중리동 412 일대 (중리서로 83 인근)	2면	장애인 주차구역

